

웅지세무대학교	재 입 학 규 정	문서번호	4-2-01(G)-0
		제정일자	06.03.01
		최근개정	15.06.30
		주관부서	입학홍보처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입학홍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의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제2조(재입학대상) 재입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한하여 허가 한다.

1. 학칙 제31조에 의한 자퇴
2. 학칙 제32조에 의한 제적

제3조(재입학신청) ① 재입학 하고자 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01.01.>

제4조(재입학허가) ①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대학을 중퇴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순위는 입시총점우수자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입학은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

1. 취득학점 많은 자
2. 평점평균이 높은 자
3. 신청학점이 많은 자

③ 기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학사경고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사경고 제적 이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한다.

⑤ 폐지된 계열(과, 전공)의 경우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입학 한다

1. 해당 학년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열(과, 전공)로 재입학 한다.
2. 입학당시의 계열(과, 전공)이 폐지된 경우는 타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⑥ 수업연한이 전환된 학과의 경우 재입학허가년도 재입학 학년의 수업연한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07.08.>

제5조(재입학제한) ① 이중 학적자는 재입학을 제한한다.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신청 후 미 등록 시 차후 재입학은 불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경위서를 재입학 모집이전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8.>

제6조(재입학학년)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기를 이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2015.06.30.>

제7조(재입학절차) ① 재입학 대상자 중 재입학 희망자는 재입학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2015.03.24.>

② 지도교수는 재입학 희망자를 면담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수학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천서를 작성하고 본인 성적증명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을 거쳐 신청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4.>

③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입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평균평점 2.0이하인 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3.01.>

②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신교과과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재입학 납입금)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년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제10조(여석산출) 재입학의 여석산정은 아래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7.08.>

※재입학의 여석산정 : 재입학허가년도 재적생수-제적생수

※정원외의 경우 제적생 발생 시 그 인원만큼 재입학 가능

< 여석 산출시 휴학생은 제적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재적생에 포함함>

부 칙 <1판-제정/시행 2006.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10.03.01.>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0.07.08.>

이 규정은 2010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12.01.09.>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판-개정/시행 2013.01.01.>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판-개정/시행 2014.08.08.>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판-개정/시행 2015.03.24.>

이 규정은 201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판-개정/시행 2015.06.30.>

이 규정은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결	지도교수	학과장
재		

재입학 원서

결	담당	팀장	처장
재			

최초 입학 전형	☐ 정원내 ☐ 정원외	학과	
재입학 학년/학기		성명	
학번		생년월일	
본인 핸드폰		보호자 연락처	
수료 학년/학기			
취득 학점		평점 평균	
제적 사유			
재입학 사유			
지도교수 추천내용			
상기와 같이 재입학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본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 성적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재입학 서약서

학 과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도교수	

<서약문>

1. 재입학생은 학칙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2.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하며, 매학기 성실의 의무를 갖고 제 규정을 준수한다.
3. 매일 실시하는 자기학습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
4. 매주 실시하는 수시고사에 참여하여 학업증진에 힘쓴다.
5.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자(매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의 제적 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6. 품행이 불량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는 경우 즉시 제적처리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결과에 순응하며 교과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웅지세무대학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서약함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학과장	학 점 포 기 원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학과					학번			
성명					학기	학 년 학 기		
사유								
해당과목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해당과목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해당과목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과목수					총학점			
상기 본인은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